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6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권영세·이인선·김승수

고동진・주호영・구자근

서일준 · 최은석 · 강대식

안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이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중요한투개표 사무를 외국인이 담당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음.

또한, 현행법 및 위임규정에 따라 다양한 신분 관련 서류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확한 확인이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대리투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된 사전투표함이나 선상투표함 등의 접수 및 인계 과정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녹화하여 일정기간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을 사전투표참관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완하여 공정한 투 ·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함(안 제146조의2제2항 단서·제147조제9항 단서 및 제174조제2항 단서 신설).
- 나. 투표소에서의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 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으로 한정하고,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157조제1항 및 제3항 등).
- 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 상투표를 접수하거나 직접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이를 확인하고 보관하도록 하 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며, 사전투 표참관인이 참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참관하게 하도록 함(안 제1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 관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4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57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이하 "신분증명서"라 하며, 해당 신분증명서를 발행하는 기관이 신분증명서를 갈음하여 발행한 서류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투표관리관은"을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58조제3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은"을 "사전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로 한다.

제17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76조제1항 중 "접수한 때에는"을 "접수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이 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이 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장소에서"로, "한다"를 "하며,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인계받은 때에는"을 "인계받은 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설치된 장소에서"로, "한다"를 "하며,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 이 경우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표관리관 등의 위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2제2항 단 서·제147조제9항 단서 및 제17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 무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
투표관리관) ① (생 략)	투표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	②
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	
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	
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
	람은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
	표관리관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⑧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⑧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9
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	
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u>
	람은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u>수 없다.</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① · ① (생 략)

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 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 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여권 · 운전면허 증ㆍ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 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 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 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 ② (생략)
- ③ 투표관리관은 身分證明書를 제시하지 아니한 選擧人에게 投票用紙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⑧ (생 략)

- 제158조(사전투표) ① ② (생 략)
 -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

	10	•	(11)	(현행과	같음
--	----	---	------	------	----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 計) ① -----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이하 "신분증 명서"라 하며, 해당 신분증명서 를 발행하는 기관이 신분증명 서를 갈음하여 발행한 서류로 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 ② (현행과 같음)
- ③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 ④ ~ ⑧ (현행과 같음)
- [제158조(사전투표) ① · ② (현 행과 같음)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 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 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 ~ ⑧ (생 략)

第174條(開票事務員) ① (생 략)

② 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③ (생략)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區
·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郵
便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
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 에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
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의 참여
하에 이를 즉시 郵便投票函에
投入・보관하여야 한다. <후단

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④ ~ ⑧ (현행과 같음)
第174條(開票事務員)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
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u>접수한 때</u>
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
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이하 이 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장소에서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상태를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u>하며,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u>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투표참관인이 참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관하게 하여야 한
<u>다.</u>
②
<u>인계받은 때에는</u>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
<u>치된 장소에서</u>
<u>하며, 해</u>
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
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
용한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u>.</u>

- ④ (생 략)
- ⑤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 투표함 보관, 그 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